

# 【 12 】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9. 03. .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 □ 개정이유

- 2020년 계획인구 43만명을 목표로 하는 고품격 도시건설과 최첨단 양주신도시 (옥정,회천)개발, 광역행정타운 조성,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자 하며
- 지난 감축 조직개편이후 나타난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구 기능, 명칭 변경,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생활민원과 명칭을 민원봉사과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지원국·주민지원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 도시개발사업소를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명칭변경하고 신도시 및 택지지구내 공공시설 사업시행, 협의 업무와 신도시관련 도로사업을 추가하여 기능을 확대함.(안 제16조)

양주시 조례 제 호

##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지원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생활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한다.

제6조 제목“(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를 “(주민지원국에 두는 과)”로 하며

제6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지원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지원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단장 등) 사업소에 각각 단장·소장·과장을 두며 단장·소장은 시장의, 과장은 단장의 명의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별 단장·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시개발사업단

- 가. 택지개발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 나. 양주신도시 유비쿼터스 건설사업 추진
- 다. 신도시 및 택지지구내 공공시설(도서관·공공청사·문화·체육시설 포함) 사업시행 및 관련부서 협의
- 라. 신도시관련 도로사업

### 2. 상하수도사업소

- 가. 상하수도사업소 운영계획 및 조정
- 나. 상·하수도 관련 행정의 종합계획
- 다.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라. 하수분뇨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
- 마. 약수터·지하수관리

3. 시립도서관

가.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시립도서관 건립 중장기 계획수립 및 집행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실 · 과		총 무 과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총 무 과 장 백 윤 기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시 정 팀 장 성 문 제
	담 당 자 직위 · 성명	이 정 수

[별표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양주시 도시개발사업단	양주시 덕정동 208-5 파르코프라자(6층)
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양주시 고암동 산13-1
양주시립도서관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548-4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u>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을 둔다.</u></p>	<p>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u>총무국, 주민지원국, 도시건설국을 둔다.</u></p>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 <u>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를 둔다.</u></p>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 <u>총무과, 공보전산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를 둔다.</u></p>
<p>제6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주민생활지원국에 <u>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산업경제과를 둔다.</u>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8 “생 략”</p>	<p>제6조(주민지원국에 두는 과) ①주민지원국에 <u>주민지원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산업경제과를 둔다.</u> ② 주민지원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8 “현행과 같음”</p>
<p>제15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u>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u></p>	<p>제15조(단장 등) 사업소에 각각 단장·소장·과장을 두며, <u>단장·소장은 시장의, 과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u></p>
<p>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상하수도사업소</u> 가. <u>상하수도사업소 운영계획 및 조정</u> 나. <u>상하수도 관련 행정의 종합계획</u> 다. <u>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u> 라. <u>하수분뇨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u> 마. <u>약수터·지하수 관리</u> 2. <u>도시개발사업소</u> 가. <u>택지개발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u> 나. <u>양주신도시 유비쿼터스 건설사업 추진</u> 3. <u>시립도서관</u> 가. <u>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u> 나. <u>시립도서관 건립 및 증개축에 관한 사항</u> 다. <u>시립도서관 건립 중장기 계획수립 및 집행</u></p>	<p>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별 단장·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도시개발사업단</u> 가. <u>택지개발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u> 나. <u>양주신도시 유비쿼터스 건설사업 추진</u> 다. <u>신도시 및 택지지구내 공공시설(도서관·공공청사·문화체육시설 포함)사업시행 및 관련부서 협의</u> 라. <u>신도시관련 도로사업</u> 2. <u>상하수도사업소</u> 가. <u>상하수도사업소 운영계획 및 조정</u> 나. <u>상하수도 관련 행정의 종합계획</u> 다. <u>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u> 라. <u>하수분뇨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u> 마. <u>약수터·지하수 관리</u> 3. <u>시립도서관</u> 가. <u>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u> 나. <u>시립도서관 건립 중장기 계획수립 및 집행</u></p>

#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정	2003. 10. 19	조례 제 1호
개정	2004. 7. 22	조례 제167호
개정	2005. 3. 3	조례 제191호
개정	2005. 5. 2	조례 제203호
개정	2005. 12. 30	조례 제223호
개정	2006. 5. 22	조례 제251호
개정	2006. 7. 1	조례 제262호
개정	2006. 12. 28	조례 제289호
개정	2007. 11. 1	조례 제324호
개정	2008. 3. 17	조례 제353호
개정	2008. 7. 16	조례 제386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내지 제11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07. 11. 1>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과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좌·보조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본 청

제3조(부시장) ①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밑에 부시장을 두며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5. 12. 30, 2006. 7. 1>

②부시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개정 2005. 5. 2, 2006. 7. 1>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 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를 둔다. <개정 2004. 7. 22, 2005. 3. 3, 2005. 5. 2, 2005. 12. 30, 2006. 7. 1>

②총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 12. 30, 2008. 7. 16>

1. 서무·의전·보안·문서·복무·인사·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및 선거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4. 주민차처센터 운영,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7. 16>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 5. 민원봉사·가족관계등록·생활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3. 17>
- 6. 토지, 지가, 지적 및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 7. 지방세·세외수입·세무조사 및 기부금 통제에 관한 사항
- 8. 회계·결산·계약·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 9. 홍보기획 및 시정홍보,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7. 1, 개정 2007. 11. 1>
- 10. 전산정보화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7. 1>
- 11. 양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2. 28>

제6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산업경제과를 둔다. <개정 2007. 11. 1, 2008. 7. 16>

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2.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재해구호,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 3.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취업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7. 16>
- 4. 노인복지,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보육, 위스타트, 장사 등에 관한 사항
- 5. 공중,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6. 문화예술, 관광, 관광지, 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7. 체육진흥, 체육단체지원, 공공체육시설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
- 8. 환경정책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9. 청소행정, 폐기물시설 및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 10. 지역경제, 유통지원, 상공업,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 11. 민자·외자유치, 경영수익사업,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
- 12.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11. 1>
- 13. 삭제 <2007. 11. 1>

[전문개정 2006. 7. 1]

제7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도시건설국에 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를 둔다.

②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도시계획·도시개발·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 2. 국공유재산 및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 3. 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4. 민방위,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 5.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 6. 도로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노점상에 관한 사항
- 8. 소규모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 9. 산림에 관한 사항
- 10.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 11. 교통·운수에 관한 사항
- 12.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3. 주택·건축에 관한 사항

14. 광고물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 7. 16]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보건소

제8조(설치) ①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7. 11. 1>

②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개정 2007. 11. 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장 등) ①보건소에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을 두고,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행정과장과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10조(소관사무) ①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1. 1, 2008. 7. 16>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지도 등에 관한 사항
6. 의료기사·의무기록사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8.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의료원 및 보건진료소 지도에 관한 사항
9. 약사·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1.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5.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1. 1>

#### 제2절 농업기술센터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1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관내 농업인들에게 신속한 농업기술 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①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농업인상담소에는 상담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시장의, 농업인상담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산물 유통, 경쟁력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축산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업개발, 농촌지도, 축산·수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 11. 1]

제4장 사업소

제14조(설치) ①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7. 11.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5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소
  - 가. 상하수도사업소 운영계획 및 조정
  - 나. 상·하수도 관련 행정의 종합계획
  - 다.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라. 하수·분뇨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
  - 마. 약수터·지하수 관리
2. 도시개발사업소
  - 가. 택지개발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 나. 양주신도시 유비쿼터스 건설사업 추진
3. 시립도서관
  - 가.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시립도서관 건립 및 증개축에 관한 사항

다. 시립도서관 건립 중장기 계획수립 및 집행  
[전문개정 2008. 7. 16]

### 제5장 읍·면·동

제17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업무, 리·동·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 3. 17>

제19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에 관한 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생활민원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 칙(2004. 7. 22 조례 제1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에 관한 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생활민원과의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본 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표 4 및 별표 5의 내용중 “폐기물관리과”를 “환경자원과”로 한다.
2. 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 제31조제3항중 “폐기물관리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 부 칙(2005. 3. 3 조례 제1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유기구) 제5조 1항의 생활민원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전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 제31조제3항중 “지역경제과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2. 「양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중 “건설행정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3. 「양주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제5조제2항중 “건설행정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 부 칙(2005. 5. 2 조례 제2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중 “개발국장”을 삭제한다.
2.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중 “개발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
3. 「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제31조제3항중 “개발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농림축산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4.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조례」 제5조제2항중 “개발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
5.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중 “농림축산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 6. 「양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조제2항중 “개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 7.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제3항중 “개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부 칙(2005. 12. 30 조례 제2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양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제10조제3항중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
- 2. 「양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중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
- 3. 「양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중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
- 4.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4조제3항제1호중 “문화체육담당관”을 “자치정보과장”으로 한다.
- 5. 「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1호중 “총무과장”을 “자치정보과장”으로 하고, 동 조제5항중 “민간협력담당”을 “주민자치담당”으로 한다.
- 6. 「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담당”을 “복지행정담당”으로 한다.
- 7.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중 “위생담당”을 “위생행정담당”으로 한다.
- 8.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중 “도로교통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부 칙(2006. 5. 22 조례 제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주시시정연구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양주시시정연구위원회조례”를 “양주시 시정연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고, 제8조제2항중 “기획담당”을 “정책개발담당”으로 한다.

②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5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부 칙(2006. 7. 1 조례 제2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중 다음과 같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자치정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③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복지행정담당”을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④양주시 위스타트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⑤양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 ⑥양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 ⑦양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 ⑧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자치정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 ⑨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 ⑩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 ⑪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 칙(2006. 12. 28 조례 제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시설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양주시립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제1항제3호, 제2항 본문, 제2항제5호,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과 제2항, 제10조 본문, 제12조, 제18조제3항, 제21조제1항 중 “소장”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 제14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중 “소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시장”을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 ② 「양주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양주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시설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항 전단과 후단, 제4항, 제4조 본문, 제5조 본문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과 제3항 중 “소장”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본문 후단,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후단2개, [별표] 제2호 부속설비 사용료 서식 중 비교란 6호중 “소장”을 “시장”으로 한다.

부 칙(2007. 11. 1 조례 제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 ②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중 “주민생활 지원국장”을 삭제한다.

부 칙(2008. 3. 17 조례 제3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로 한다.

- ⑥양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 ⑦양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 ⑧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자치정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 ⑨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 ⑩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 ⑪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 칙(2006. 12. 28 조례 제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시설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양주시립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제1항제3호, 제2항 본문, 제2항제5호,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과 제2항, 제10조 본문, 제12조, 제18조제3항, 제21조제1항 중 “소장”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 제14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중 “소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시장”을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 ② 「양주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양주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시설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항 전단과 후단, 제4항, 제4조 본문, 제5조 본문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과 제3항 중 “소장”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본문 후단,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후단2개, [별표] 제2호 부속설비 사용료 서식 중 비교란 6호중 “소장”을 “시장”으로 한다.

부 칙(2007. 11. 1 조례 제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 ②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중 “주민생활 지원국장”을 삭제한다.

부 칙(2008. 3. 17 조례 제3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로 한다.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 ② 「양주시 포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제(4)번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 ③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적”을 삭제한다.
- ④ 「양주시문화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중 “본적이”를 “등록기준지가”로 한다.

부 칙(2008. 7. 16 조례 제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환경보호과장, 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환경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제4항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제5항중 “관련업무 담당”을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환경보호과장, 환경자원과장, 건설과장”을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건설재난과장”으로 하고, 제8조중 “친환경상품 관련업무 주부담당”을 “친환경상품 관련업무 주부팀장”으로 한다.

별표 1제1호, 제2호, 제3호중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다.

③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중 “사회복지과장, 환경자원과장”을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④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건설재난과장”으로 하고, “상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⑤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중 “상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⑥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알림 내용 하단의 “양주시상수도사업소”를 “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전화 : 820-5651 ~ 5658)”로 한다.

⑦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명 “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양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상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제3항중 “보건소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급수담당주사”를 “상수도시설팀장”으로 한다.

⑧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사회복지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제6항중 “위생업무담당”을 “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제2호중 “위생행정담당”을 “식품진흥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제2호중 “노인정책담당”을 “노인업무팀장”으로 한다.

⑩양주시여성복지아동상담소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및제4조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⑪양주시 위스타트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⑫양주시청소년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⑬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가목, 나목, 다목 중 “환경자원과”를 “청소행정과”로 한다.

별표 6의 서식중 “환경자원과”를 “청소행정과”로 한다.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별표 1] <개정 2007. 11.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양주시 보건소	유양동 1-1	양주시 일원
양주시 보건소 은남통합보건지소	은현면 운암리 458-18	은현면, 남면, 광적면 일원
양주시 보건소 장흥지소	장흥면 일영리 137-2	장흥면 일원
연곡 보건진료소	백석읍 연곡리 241-2	백석읍 연곡리, 홍죽리 광적면 우고리·비암리
봉암 보건진료소	은현면 봉암리 184-5	은현면 봉암리, 하패리 남면 한산리
매곡 보건진료소	남면 매곡리 305	남면 매곡리, 구암리, 신암리 광적면 효촌리
고주내 보건진료소	양주시 삼송동 315	삼송 1·2통, 만송 1·2·3통

[별표 2] <개정 2007. 11. 1>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제11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광적면 광석리 278	양주시 일원
백석 농업인상담소	백석읍 오산리 432	백석읍 전지역
은현 농업인상담소	은현면 선암리 341-2	은현면 전지역
남면 농업인상담소	남면 신산리 268-2	남면 전지역
광적 농업인상담소	광적면 가납리 737-6	광적면 전지역
장흥 농업인상담소	장흥면 일영리 139-2	장흥면 전지역
양주 농업인상담소	양주시 남방동 119	양주 1·2동 전지역
회천 농업인상담소	양주시 덕정동 141	회천 1·2·3·4동 전지역

[별표 3] <개정 2006. 5. 22, 2006. 12. 28, 2007. 11. 1, 2008. 7. 16>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양주시 고암동 산13-1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소	양주시 덕정동 208-5 파르코프라자(6층)
양주시립도서관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548-4

(추 10)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별표 4] 삭제 <2007. 11. 1>

(추 10)